

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 재발급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
신청인 (대표자)	성명	생년월일	
	주소	전화번호	
신청 내용	제조업체명	전화번호 (FAX)	
	제조업등록번호	제조업등록 연월일	
	소재지		
	관리책임자	생산능력(1일 생산량)	
	생산사료	양축용 배합사료([]고기소 []젓소 []돼지 []닭 []개 []말 []면양·산양 []사슴 []오리 []칠면조 []토끼 []메추리 []꿩 []오소리 []타조), []농가 자가배합사료 원료, []프리믹스용 배합사료, []대용유용 배합사료, []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, 그 밖의 동물·어류용 배합사료([]실험용 동물 []애완용 동물 []사육하는 동물 []어류), []단미사료, []보조사료	

재발급 신청사유

「사료관리법」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1.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 적용 사료공장 지정서 원본(분실 시에는 분실 사유서) 2.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「사료관리법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8조에 따른 수수료
------	--	---

처리절차

